농 촌 진 흥 청 시 정 요 구

제 목 ㅇㅇㅇㅇ 관비재배단지 조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미반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계기관 밀양시

내 용

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발굴 육성을 위한 "2014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(〇〇〇〇 관비재배 단지조성사업)"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」제53조의3항에 따르면 "사업 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"으로 하고 있으며

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」제31조에 따르면 "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"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

그런데도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(〇〇〇〇 관비재배 단지조성사업, 400백만원)을 추진하면서 소포장재 제작(사업비 12,111,400원)을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1,090,92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밀양시장은

보조사업자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1,090,920원을 반환하시고,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바랍니다.